

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「전자서명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17354호, 시행 2020. 12. 10.)되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개정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라 전자문서, 전자서명, 인증서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정비함(안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)

4.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 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1호 중 “컴퓨터 등”을 “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전자서명”이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을 말한다.
3. “인증서”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를 말한다.

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”를 “인증서”로 한다.

제73조제2항 중 “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”을 “전자서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공인전자서명”을 “전자서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

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8조(용어의 정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전자문서”란 <u>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·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2.·3. (생 략)</u></p> <p>제70조(사용자등록) ① 전자공탁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공</p>	<p>제68조(용어의 정의)----- ----- --.</p> <p>1. -----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----- ----- -----.</p> <p>2. “전자서명”이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을 말한다.</p> <p>3. “인증서”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를 말한다.</p> <p>4.·5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제70조(사용자등록) ①----- ----- -----</p>

택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등록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73조(전자문서의 작성·제출)

① (생략)

② 등록사용자가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1.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

2. (생략)

④ ~ ⑥ (생략)

----- 인증서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73조(전자문서의 작성·제출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전자서명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1. -----

-----전자서명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	
연락처	(02) 3480-1877